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임종성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266

발의연월일: 2021. 1. 8.

발 의 자 : 임종성 · 앙이원영 · 소병훈

김윤덕 · 김정호 · 안규백

윤후덕 • 정춘숙 • 김철민

최종윤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한강수계법의 주민지원사업 대상자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재산의 계속 소유 여부, 상속·증여 여부 등 자격 요건의 변동 확인이 매년 필요함.

현행법은 해당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개인 정보 자료 요청 및 처리 근거가 없어 대상자 확정 지연 및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.

이에 따라 주민지원대상자의 신속한 확정 및 오류 발생 최소화로 상수원 관리지역의 주민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관련 정 보의 이용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.

한편,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4호가목, 제5조제1항제6호, 제8조의5제6항, 제11조의3).

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다목 중 "「하수도법」 제2조제10호"를 "「하수도법」 제2조제11호"로 한다.

제5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"「주택법」 제2조제4호의 준주택에 해당하는 노인복지시설"을 "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"로 한다.

제8조의5제6항 중 "「환경개선특별회계법」"을 "「환경정책기본법」"으로 한다.

제11조의3을 제11조의4로 하고,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의3(자료 등의 요청 및 처리) ①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 및 관리청은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- 1.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주민등록 자료 또는 정보
- 2.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자료

또는 정보

- 3. 「부동산등기법」에 따른 등기 자료 또는 정보
- 4. 「건축법」에 따른 건축물대장 자료 또는 정보
- 5.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적공부 자료 또는 정보
- 6. 「국세기본법」 및 「지방세기본법」에 따른 과세 자료 또는 정보
- ② 한강수계관리위원회 및 관리청은 주민지원사업 업무의 원활한수행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			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		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			
4. "환경기초시설"이란 다음 각	4			
목의 시설을 말한다.				
가.・나. (생 략)	가.・나. (현행과 같음)			
다. 「하수도법」 제2조제10	다. 「하수도법」 제2조제11			
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	<u>ই</u>			
라. ~ 바. (생 략)	라. ~ 바. (현행과 같음)			
5. • 6. (생 략)	5. • 6. (현행과 같음)			
제5조(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	제5조(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			
등) ① 누구든지 수변구역에서	등) ①			
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			
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설치(용				
도변경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				
에서 같다)하여서는 아니 된다.				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			
6. 「주택법」 제2조제4호의 준	6.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노인			
주택에 해당하는 노인복지시	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			
<u>설</u>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	<u> 지시설</u>			
에 해당하는 시설				
가. ~ 다. (생 략)	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			
7.・8. (생 략)	7. · 8. (현행과 같음)			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			

- 제8조의5(오염총량초과과징금) ① ~ ⑤ (생 략)
 - ⑥ 오염총량초과과징금과 제4 항에 따른 가산금은 「환경개선 특별회계법」에 따른 환경개선 특별회계의 세입(歲入)으로 한 다.

⑦·⑧ (생 략) <신 설>

제8조	:의5	(오염	총링	F초괴	-과징	(금)	1
~	(5)	(현행	과	같음)	1		
6							
					「환	경정	l 책
<u>기</u> -	본법						

⑦·⑧ (현행과 같음)

제11조의3(자료 등의 요청 및 처리) ①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 관리위원회 및 관리청은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- 1.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주민 등록 자료 또는 정보
- 2.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자료 또는 정보
- 3. 「부동산등기법」에 따른 등 기 자료 또는 정보
- 4. 「건축법」에 따른 건축물대

	장 자료 또는 정보
	5.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
	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
	적공부 자료 또는 정보
	6. 「국세기본법」 및 「지방세
	기본법」에 따른 과세 자료
	<u>또는 정보</u>
	② 한강수계관리위원회 및 관리
	청은 주민지원사업 업무의 원활
	한 수행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
	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처
	리할 수 있다.
제11조의3 (생 략)	<u>제11조의4</u> (현행 제11조의3과 같

음)